

반부패 청렴활동의 이해

감 사 실





I. 청렴이란?

1. 청렴의 정의

청렴실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전적 정의

-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목민심서 율기육조(律己六條)

- 제1조와 제2조가 칙궁(飭躬)과 청심(淸心)으로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청렴' 하라는 뜻

2.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

청렴실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뇌물수수

불평등

개인정보

방만경영

순위	회사명	매출액 (백만원)	이익금 (백만원)	이익률 (%)
1	삼성	1,499.9	982.0	65.5
2	SK	1,310.6	304.2	23.2
3	현대	1,213.1	846.1	69.8
4	SK이노베이션	1,105.0	555.2	50.2
5	SK하이닉스	995.0	603.9	60.7
6	한국전력공사	980.2	421.1	43.0
7	한국예탁결제원	968.0	508.4	52.5
8	한국가스기술공사	777.0	734.5	94.5
9	대한주택보증	744.9	234.6	31.5
10	한국조세공사	744.6	565.9	76.0
11	부산항만공사	718.6	466.8	65.0
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07.9	707.9	100.0
13	한국전력기술	693.6	384.0	55.4
14	부산대학교병원	688.7	688.7	100.0
15	충청고진출공사	655.0	103.1	15.8
16	한국에너지공단	605.6	318.4	52.6
17	한국농수산공사	595.6	353.9	59.4
18	한국항공공사	591.3	531.6	90.0
19	한국수력원자력	585.1	407.9	69.7
20	한국수력원자력	571.9	267.1	46.7

“청렴하지 못한 행위는 기관 이미지와 신뢰도에 막대한 영향”

3.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청렴실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공직자에게 청렴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

청렴성이 조직과 사회에서 존중 받는 풍토

(공직자 = 청렴성)

- 종교인 → 신앙
- 군인 → 충성심, 명령 복종
- 교수 → 전문성



4. 공직자가 청렴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청렴실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청렴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청렴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 권위에 눌려서
- 탐욕에 굴복
- 집중력 저하
-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5. 국가가 바라보는 청렴하지 못한 행위

청렴실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법령위반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 나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II. 청렴도 측정

1. 국민권익위원회가 바라보는 청렴도

청렴실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
- 부패 직·간접 경험 및 인식,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투명성 및 결과의 책임성, 조직의 청렴문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의미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수치화”

2. 청렴도 측정의 필요성 및 목적

청렴실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청렴도 측정의 필요성』

- 국가행정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현하고 정부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국가 청렴수준 향상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에 기여

『청렴도 측정의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 및 효과적인 반부패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우선 개선영역 및 취약업무 파악
- 측정결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기관 자율적인 청렴도 제고활동 환경 조성
- 청렴도 측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부패척결과 청렴도 제고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는 계기 마련

3. 공단 청렴도 측정 결과

청렴실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측정 개요

- 측정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 대상기관 : 총 653개 기관 중 준정부기관(86개)으로 분류
 - 측정대상 : 외부청렴도(고객*) 300명, 내부청렴도(직원) 150명
- * 대상업무(4개) : 노령연금, 장애·유족연금, 연금수급 변동자 사후관리, 자산운용

측정 결과

구분	2012년	2013년	증 감	비 고
종합청렴도	8.04 (Ⅳ등급, 66위)	8.18 (Ⅳ등급, 61위)	+0.14	
외부청렴도	8.28 (Ⅴ등급, 69위)	8.24 (Ⅳ등급, 77위)	-0.04	전년대비 등급상승
내부청렴도	8.14 (Ⅲ등급, 36위)	8.28 (Ⅲ등급, 36위)	+0.14	
감 점	-0.20	-0.07	+0.13	호의적 평가유도(3명)

* 결과 활용 : 기획재정부의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4. 외부청렴도 결과

청렴실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 항목별 결과는 부패 직/간접경험이 가장 높고(각 10점 만점), 투명성이 가장 낮음(7.78점)
- 업무별 결과는 자산운용이 가장 높고(9.52점), 사후관리가 가장 낮음(8.53점)

항목별 측정결과



업무별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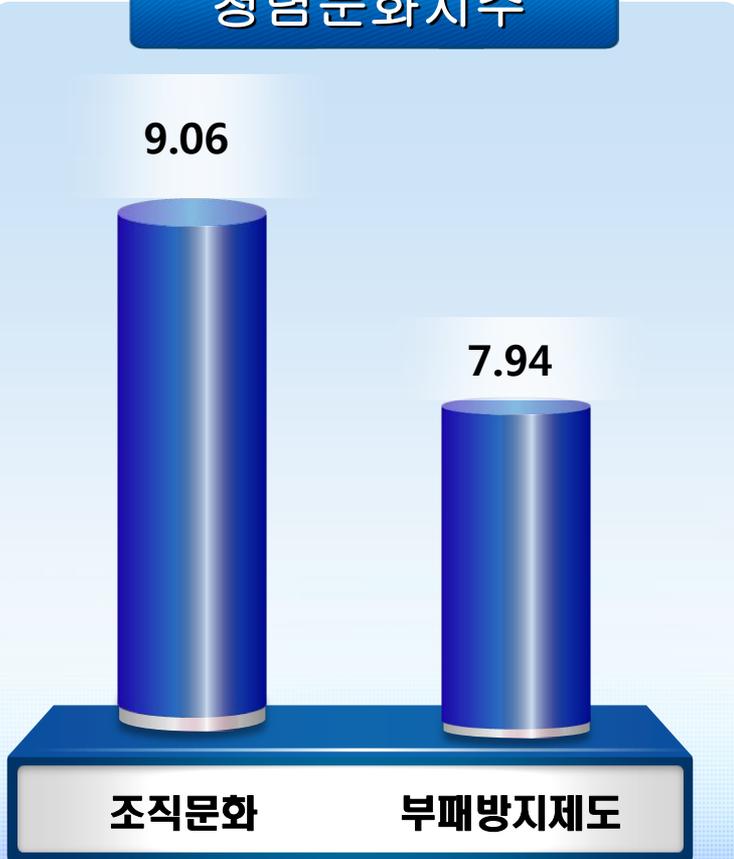


5. 내부청렴도 결과

청렴실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 청렴문화지수는 조직문화가 9.06점이고, 부패방지제도가 7.94점임
- 업무청렴지수는 예산집행이 가장 높고(8.53점), 업무지시 공정성이 낮음(7.25점)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III. 청렴도 제고방안

1.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청렴실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청렴이미지 제고』

- 청렴도 연계 홍보활동 강화
- 계약업체 등 공단 거래기관 대상 상임감사 명의 '클린레터' 정기발송

『업무처리 투명성, 수용성 제고』

- 수의계약 현황 홈페이지 공개
 - 고객에게 제공되는 각종 안내문 등에 청렴도 관련 문구 활용
- *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청렴도 감사활동 강화

2.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청렴실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투명성)

공정한 업무처리 및 설명을 통한 부패인식 차단(공정성)

고객중심의 자세하고 친절함 상담 필요(책임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신고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 편의, 선물 제공
- 인사 관련 부패행위와 위법한 업무 추진 등

국민연금 헬프라인과 내부신고보호제도 활성화

- 외부업체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헬프라인(Help-line)으로 신고



IV. 임직원행동강령

임직원 행동강령의 개념

-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

2. 주요내용

청렴실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제7조) 인사 청탁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임직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도 안 됨

(제11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됨

(제19조) 금품 등의 수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로부터 금품 등(금전·향응·선물)을 받아서는 안 됨. 다만,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선물, 음식물, 편의 등은 가능함

3. 신고 등 의무사항

청렴실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

강령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국민연금 헬프라인 신고
- 직무 수행 시 알게된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강요받거나 제의 받은 경우도 포함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을 즉시 반환

행동강령 준수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작성

-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전자결재에서 작성 및 제출



V.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11. 9. 30. 시행)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이곳에 하세요!

- ① 공익침해행위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② 소관 행정·감독기관
- ③ 수사기관
- ④ 국민권익위원회
- ⑤ 국회의원
- ⑥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보호 조치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제재 유형	위반 유형
징계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 건강 분야

AIDS에 감염된 혈액유통

- 혈액관리기관의 잘못된 헌혈관리 및 혈액관리로 에이즈(AIDS)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행위 (혈액관리법 위반)

• 관련 법률

의료법 등 45개



➔ 환경 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수천 톤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행위 (폐기물관리법 위반)

• 관련 법률

자연환경보존법 등 50개



➔ 안전 분야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하여 자동차 공업시에 납품하는 행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 관련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6개



➔ 소비자 이익 분야

가짜 참기름 유통

- 중국산 참기름과 식용유를 혼합해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한 행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 관련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24개



➔ 공정 경쟁 분야

LPG 담합

- 정유회사가 6년간 LPG 가격을 담합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관련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감사합니다.